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826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하반기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7년도 서울특별시 하반기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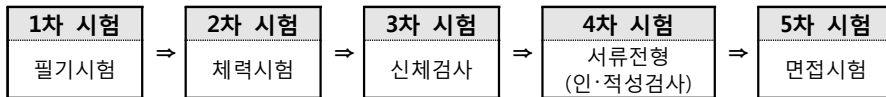
I 채용 예정인원 및 시험절차

○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구분	채용분야	채용계급	채용 예정인원 (명)		
			계	남자	여자
계			30	28	2
경력경쟁채용	구급	지방소방사	30	28	2

※ 오토바이 구급대 운영요원 확보를 위해 2종소형 면허 소지자 면접시 우대함
 (서류전형시 까지 2종소형 면허증 사본 제출자에 한함)

○ 시험절차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II 응시 자격

○ 응시 결격사유 등 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51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아닐 것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상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지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영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응시 연령

채용구분	채용계급	채용분야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경력경쟁 채용	지방 소방사	구급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7. 12. 31.
<p>【응시상한 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각각 연장</p>				

○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별표5>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 거주지 : 제한 없음

○ 면허(자격) 및 경력제한

공통사항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제 종 운전 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기준일 : 운전면허는 원서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경력경쟁채용 구급 응시자격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구급	<p>◆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면허(자격)증을 취득 후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제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p>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p> <p>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p> <p>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p> <p>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p> <p>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p> <p>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p> <p>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p> <p>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p> <p>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p> <p>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p>

※ 오토바이 구급대 운영요원 확보를 위해 2종소형 면허 소지자 면접시 우대함 (서류전형시 까지 면허증 사본 제출자에 한함)

면허 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기준일

- 가 자동차운전면허증 응급구조사 급 간호사
원서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 면접시험최종일 까지 유효하여야 함
- 나 경력경쟁 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최종시험일 면접시험 최종일

면허 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유의사항

- 가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나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징계사항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처리

III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 시험방법

①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시험과목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과목별 문항

※ 생활영어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시험시간 60분(10:00~11:00)

문제출제 중앙소방학교 시험문제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채용 분야별 동점자가 있을 시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②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시험종목 중목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종목별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붙임 2],[붙임 2-1]

☞ **합격자 결정**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도핑테스트 시행 안내

-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핑테스트 실시
- ▷ 도핑테스트 대상자는 **응시인원의 10%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
- ▷ 도핑테스트 시행절차,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 3-2]참조

③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수수료 개별 납부)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가 적합한 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의 [별표3]에 의함[붙임 4].

신체검사 지정병원은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시 알려드림

색각이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 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람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등 재검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면접시험 전일까지 최종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④ 제4차 시험 : 서류전형(인·적성검사)

면허 자격 증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서류 심사

☞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및 근무경력 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등이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5에 근거하여 인성·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함

제 차 시험 면접시험

개 평가요소에 대하여 집단면접 단계 과 개별면접 단계 실시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2.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5.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

VI 응시자 유의사항

○ 공통유의사항

가 시험원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 불능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특히 접수 시 가산점 미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각 단계별 시험의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분 전까지 이후 입장 불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 응시 포기로 간주되며 제 차 필기시험의 경우 카드 답안지 작성을 위해 **반드시 시험본부에서 지급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재출력할 수 있음

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일정 등 관련정보는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시험 필기·체력·신체·면접시험은 우천 강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 경우 별도 공지 합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일 일전까지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제1차 필기시험 유의사항

가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 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 결과자 포함**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 조에 의해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연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나 **필기시험 답안지를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없으며** 사용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 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통신장비를 지참한 경우 시험실시 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자진 제출하거나, 소지가 확인 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카드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카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필기시험 성적열람은 필기시험 불합격자 본인 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문 참조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제2차 체력시험 유의사항

가 금지약물의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고자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나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 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다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체력시험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시험 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체력시험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체력시험 중 바닥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장갑이나 스파이크 신발 또는 체력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 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바 체력시험 중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제3차 신체검사 유의사항

가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나 색각이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 색각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체검사는 지정된 병원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실시하여야 하며 응시자 본인이 직접 검사예약 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 결과지를 정해진 기일까지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 시 신분증 및 응시표 사진 검사비용 등 지참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의 제한 및 임용결격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인재채용팀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 응시자 도핑테스트 동의서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끝

◎ 시험관련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인재채용팀)

- ▶ 전 화 : 02) 2106-3621~5, FAX 02) 2106-3666
- ▶ 홈페이지 : <http://fire.seoul.go.kr/school>
-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29(서초동 391)
- ▶ 교 통 편 :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④번 출구(도보 15분)

◎ 인터넷 원서접수 시 문의사항 : (주) 진학어플라이

- ▶ 전 화 : 1544-7715
- ▶ 홈페이지 : <http://fire.jinhakapply.com>

[붙임 1]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소방용 기계 기구의 제조 검정
	2) 소방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의 정의 - 연소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방식 등 연소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분 야		내 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의 유별(제1류 ~ 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기초 등 화재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의 기본원리(방법) - 소화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 효과)별 소화수단
	2) 소화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붙임 2]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붙임 2-1]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악 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쪽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 근 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빠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뺀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뺐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붙임 3]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 관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한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붙임 4-2 참고)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로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3-1]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 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 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 붙임 3-1. 응시자 대상 검사 동의서
- 3-2.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3-3.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동 의 서

성 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연 락 처

년 월 일

위 본인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소방
공무원임용령 제 조에 따른 금지약물의 복용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확인절차에 응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I. 금지약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동화작용제 총 종 및 그 대사물질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

-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drostanolone ▶ methenolone
 -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 stanozolol
 -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이뇨제 총 종

- ▶ 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 furosemide

흥분제 총 종

- ▶ methylhexanamine(dimethylpentylamine)
- ▶ methylephedrine ▶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마약류 총 종

- ▶ Buprenorphine ▶ dextromoramide ▶ diamorphine(heroin)
- ▶ fentanyl 및 유도체 ▶ hydromorphone ▶ methadone
- ▶ morphine ▶ oxycodone ▶ oxymorphone
- ▶ pentazocine ▶ pethidine

II. 금지방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 소변 바꿔치기 및 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_____ 2. 성별: 여 남
 3. 생년월일: _____ 4. 응시번호: _____
 5. 핸드폰: _____ 6. 이메일: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응급
 기간(주/월) _____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 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 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붙임 4]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야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구 분	내 용
12. 귀	가.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3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붙임 5]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2)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마다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야별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 4)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의사상자 등 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 2) 단,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3)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4)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가'항과 '나'항이 모두 해당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 시(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OMR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됨)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2)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는 별도 지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